

# \*\*\* 공지사항 \*\*\*

## 제18회 본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본회의 '94년도 제18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일시 : '94. 2. 22(화) AM 11:00  
나.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4층 국제 회의실  
다. 부의사항  
1) '93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  
2) '9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라. 부대행사 : 제2회 올해의 전자공업대상 시상식  
마. 문의처 : 본회 총무과(Tel : 553-0941/7)

## 「해외정보통신전시회 (CeBIT '94) 참관단 모집안내」

정보통신산업은 다른산업에 파급효과가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통신분야, 컴퓨터로 통합된 생산관리 기술, 연구컨설팅, 사무자동화, CAD, CAM 등의 품목으로 최신기술정보 및 첨단제품이 선보일 세계 최대의 컴퓨터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CeBIT' 94 (독일 하노버 개최)에 참관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여 참관코자 하오니 관련업계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참관계획

- 가. 방문일정 : '94. 3. 17~24(7박8일)  
나. 참관단 모집인원, 비용  
○모집인원 : 15명내외(선착순 마감)  
○참가비용 : 1,700,000/1인(여권 발급비를 제외한 모든경비)  
(입금계좌 : 상업은행(196-05-068278 전자공업진흥회 구자학)

- 다. 신청기간 : '94. 2. 1~2. 28(월)  
라. 특기사항 : 소요 비행시간 12시간 30분이며, 호텔은 특급, 참가비용에는 전일정 식사, 숙박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하였음  
마. 문의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부 정보산업과  
(TEL : 553-0940/7, FAX : 555-6195)

### 2. 전시회 개요

- 가. 전시회명 : CeBIT '94  
나. 개최기간 : '94. 3. 16~23  
다. 개최장소 : 독일 Hannover 세계 정보통신 기술센터  
라. 전시업체 : 50여개국 6,000개 업체(방문객 50여만명)  
마. 주요 전시품  
○Office an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Equipment  
○Software, Database, Management Consulting  
○Software, Database, Management Consulting  
○Peripheral Dp Equipment  
○Office Automation  
○Branch-Oriented Solutions, Microcomputer, Pc  
○Network Computing : Lan, Man, Wan, Internetworking  
○Tele Communicat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Consulting  
○C-Techologies : CIA, CAD CAM, CAE, CAG, PPC, MAP, TOP 등  
○Production Data Management  
○Tranining And Personnel Development, Audio-Visual Technology

## '94 수입선 다변화 품목 현황 안내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3-127호 ('93. 12. 31)

# \* \* \* \* \* 공지사항 \* \* \* \* \*

## 1. 품목수

구 분	현 행	개 정
전 체	258	230
전 자	50	46

\* HS 10단위 기준임.

- 1) '87 : 632개
- 2) '90 : 268개
- 3) '91 : 258개
- 4) '93 : 258개
- 5) '94 : 230개

## 2. 전자제품 다변화 해제 내용

H S	품 명	설 제 품
8519. 91. 2010	자동차용 디자털음성 재생기	자동차용 DAT
8519. 21. 0000	디지털식 레코드플레이어	디지털식 턴테이블
8527. 21. 3000	아날로그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된 자동차용 라디오 방송 수신용기기	자동차용 라디오 CDP 아날로그 카세트 결합제품
8528. 10. 4000	비디오 투너	BS 투너

## 3. 전자제품 수입선다변화 품목

H S	품 목
3818 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 (구경 5", 6"의 Polished Wafer에 한함)</li> </ul>
7011 2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TV 기준 21"에 한함)</li> </ul>
8469 10 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드프로세싱 머신</li> </ul>
8471 20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개인용 컴퓨터에 한함)</li> </ul>
92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린터 중 다음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pact Dot Matrix Type(해당 인자수가 영문 60자 이상이고 1인치당 영문 10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00자 또는 1인치당 영문 12자 기준일 때 최대속도가 초당 360자 이내의 것에 한함)</li> <li>- Laser Bean Type(단색용이며 날장용지 공급방식으로 인쇄용지 규격이 B4 이하의 것에 한함)</li> </ul> </li> </ul>
93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두께가 0.7" 이상이면서 디스크 직경이 3" 이상 6" 이하의 것에 한함)</li> <li>현금자동지불기</li> <li>전기밥솥 (보온기능을 가지것을 포함)</li> </ul>
8472 90 1010	
8516 60 2000	

H S	품 목 명
8517 82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사전신기기</li> <li>모사전신기기의 부품품</li> </ul>
8518 40 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주파증폭기 (다만, 가정형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li> </ul>
8519 91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테크메카니즘 포함, 아날로그식에 한함)</li> </ul>
99 3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li> </ul>
3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li> </ul>
3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li> </ul>
8520 31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용의 카세트형 녹음기(디지탈식에 한함)</li> </ul>
90 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세트형의 테크(디지탈식에 한함)</li> </ul>
8521 1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폭 12.7mm 초과)</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폭 12.7mm 이하)</li> </ul>
9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li> </ul>
8525 20 7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용의 무선전화기</li> </ul>
7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용의 무선전화기</li> </ul>
3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li> </ul>
8527 11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스크형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 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li> </ul>
21 1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세트형의 자동차용 라디오방 송수신용기기, 다만, 아날로그식은 제외</li> </ul>
31 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스크형의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기타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li> </ul>
1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컴팩트디스크와 아날로그식 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li> </ul>
8528 10 9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칼라텔레비전 수상기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53.34cm 이상 63.50cm 미만의 것)</li> </ul>
8529 10 9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칼라텔레비전 수상기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63.50cm 이상의 것)</li> </ul>
8537 1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제어반 (1,000볼트 이하의 것) 중 다음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li> <li>- 수치제어장치 중 동시제어 축수가 2축이하의 것</li> </ul> </li> </ul>
8539 31 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 다만, 특수용도 형광 등으로서 자외선차단용(미술관, 밤문화, 인쇄공장등의 퇴색방지용), 복사용 칼라슬라이드용, 전자사진용, 광학학반응용, 살균용, 식물재배용, 일</li> </ul>

공지사항

H	S	품 목 명
		담배등 농업용, 의료용, 식육점(Red Color) 및 과일, 생선, 야채 등의 쇼케이스용과 관경이 22mm 이하의 것으로서 FDL형 및 28W 이상의 FML, FPL형의 것은 제외
8540	11 0000	21" 이상 천연색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및 14" 영 상모니터용 음극선관(0.28 Dot Pitch 및 0.41 Strip Pitch에 한함)
8544	20 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8548	00 0000	• 모사전신기용 Thermal Printer Head
9006	51 9000	• 35mm를 필름용의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것) 51 9090
9009	12 0000	• 35mm를 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 •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다만, 복사원 고크기 A2이상의 것과 복사속도 A4 기준 50매/분 이상의 것 및 도서목록카드 전용복사기는 제외
9017	10 0000	• 만능제도기(DRAFTING M/C)제도판의 포함여 부를 불문하여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함 - 전자식 각도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된 것 - 디지털식 또는 다이알식 각도분할헤드를 갖춘 것으로서 자기부상 장치가 부착된 것
9018	19 5000	•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만, 칼라혈류영상진단기(COLOR FLOW MAP- PING M/C는 제외)
9033	00 0000	•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 측정을 위한 소모형 센서 포함) 및 동부분품
9102	19 0000	•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9207	10 1000	•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
9405	60 9000	•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504	10 0000	• 비디오게임 용구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안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 시제 실시요령(상공자원부 고시 제92-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4년 1월 27일  
상공자원부장관

###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

제 1조(목적) 이 고시는 공산품(소매가격표  
시 의무업소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 등  
을 포함한다)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  
교환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  
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제 4조에 의해 공장도가격, 수입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 무역업자 및 소매업자를 말한다.

2. “백화점”이라 함은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의 2의 백화점을 말한다.

3. “쇼핑센타”라 함은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의 2의 쇼핑센타를 말한다.

### 제 3조(표시대상 가격 및 품목)

① 가격의 표시는 공장도 가격표시, 수입 가격 표시 및 소매 가격표시로 구분한다.

② 공장도 가격표시 대상품목 및 수입 가격표시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소매 가격표시 대상품목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 제 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제3조 제2항 별표1의 공장도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장도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수입 가격표시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무역업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수입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수입면장에 표기된 무역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제5조 제2항에 의한 수입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상품에 대해서는 동제품을 매수한 자가 제5조 제2항에 의한 수입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지사항

③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 표2의 업종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는 소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매장면적이 33m<sup>2</sup>이상인 모든 소매점포
  2. 백화점, 쇼핑센타 내의 모든 소매점포
  3. 기타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

④ 소매업자는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5조(표시가격)

① 공장도가격은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적정한 이윤과 제세를 가산한 것으로 산정, 표시한다. 다만, 하청 주문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표시한다.

② 수입가격은 CIF가격에 수입통관과 관련된 관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세를 가산한 가격으로 산정, 표시한다. 다만, 수입가격표시 의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이외에 수입가격 표시의무자가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수입자 공급가격"으로 표시)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CIF가격, 관세, 교육세 등 수입가격의 구성 항목을 세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124조에 의해 매각된 상품의 경우에는 낙찰가격 또는 수의계약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표시한다.

③ 소매가격은 소매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가산하여 자신이 받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한다.

### 제 6조(표시방법)

①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은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이용하여 표시하되,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3조 제2항 별표 1의 표시위치(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업자(무역업자)는 승용  
자동차용 타이어의 단면폭/편평비/림직경  
별로 1개 이상 규격의 공장도가격(수입가격)  
을 [별지]의 양식과 같은 가격표에 인쇄하여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배포하여  
야 하며, 소매업자는 동 가격표에 소매가격을  
기재하여 매장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매가격은 개별상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소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은 제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지정된 소매점포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 의무자가 가회망(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과 회망(권장) 소비자가격을 동일한 크기로 나란히 표시되어야 한다.

⑤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가 표시한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가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7조(기본지침의 시달 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침에 관한 사항

# \*\*\* 공지사항 \*\*\*

3.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 8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 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00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에 의한 공장도가격, 수입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3.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 10조(보고)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년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1조(기타 세부규정)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하여 가격표시 방법이 변경된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자와 새로이 가격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자는 '94. 4. 1부터 대상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안경테 및 안경렌즈의 가격표시제 시행) 부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가격표시제는 '95. 12. 31까지 그 시행을 유보한다.

## 가전제품

품 목	H	S	표 시 범 위
①선풍기	8414 51 0000		
②에어컨	8415		산업용은 제외
③냉장고	8418 10		
	8418 21		
	29		
④가습기	8419 89 9070		
⑤공기청정기	8421 39 1000		
⑥식기세척기	8422 11 0000		
⑦세탁기	8450		
⑧진공청소기	8509 10		
⑨전기미서	8509 40 0000		
⑩전기면도기	8510 10 0000		전전지 면도기 포함
⑪전기순간온수기	8516 10 0000		
⑫전기다리미	8516 40 000		
⑬전자렌지	8516 50		
⑭보온밥솥	8516 60 2000		
⑮보온밥통	8516 79 1000		
⑯전화기	8517 10		휴대용 전화기, 카폰포함
⑰스피커시스템	8518 22 0000		
⑱앰프세트	8518 40		앰프세트는 서라운드 앰프, 마이크로믹싱 앰프, EQ앰프, PRE앰프, 파워앰프, 에코앰프, 리듬박스 등을 의미함.
	50		
⑲전축 및 레코드 플레이어	8519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LDP) 포함

# 공지사항

품 목	H	S	표 시 범 위
⑨ 헤드폰스테레오 (워크맨)	8519 91 1020 91 2020 99 3020		
⑩ 테이프데크	8520 90		
⑪ VTR	8521		
⑫ 비디오카메라	8525 30 1000 8527 11 19		
⑬ 라디오	8527 21 29 8527 31 39	카세트 및 CDP복합제품 포함(자동차용 라디오는 제외)	
⑭ 튜너(오디오)	8527 90		
⑮ 무선호출기	8527 90 2010		
⑯ TV수상기	8528 10 8528 20		
⑰ 위성방송 수신	8529 10 9210		
⑱ TV 암테나			
⑲ 전기스텐드	9405 10		
⑳ 환형 형광등기구			
㉑ 상들리에			

\* 표시 위치는 16 No, 전화기 제품측면을 제외하고는 제품앞면에 위치함.

## 산업재해 예방 시설자금 응자제도 안내

산업재해 예방 시설자금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1) 응자대상자

-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기관
- 산업안전보건 관련 창안제도의 수상품 생산·보급자

### 2) 응자대상

- 유해위험기계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의 대체
- 각종 보호구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
  - 작업환경 측정기계·기구
  - 법령에 의하여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기구·설비 및 기자재
  - 법령에 의하여 합격한 보호구의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 비영리법인, 민간기관이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 산업안전보건 관련 창안제도의 수상품을 생산·보급하기 위한 기계설비
- \* 응자신청 이전에 설치 완료된 것은 제외
- 3) 응자품명 : 530종
  - 4) 지원내용

94응자제원	453억원	응자 신청기한	연중 (매월 15, 말일까지)
응자한도액	2억원(비영리법인 및 민간기관 등 3억원) 【소요자금의 90% 이내】		
금 리	연 6%		
응자 기 간	10년이내(3년거치, 7년상환)		
응자 취 급	중소기업은행, 농협, 주택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동화은행, 보람은행, 외환은행, 장기신용은행, 축협, 평화은행, 한일은행, 동남은행, 상업은행, 신탁은행, 강원은행, 경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동은행, 충청은행		
금 융 기 관	(26개 은행)		

- 5)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부  
TEL : (02)798-8801(교, 6151/4)  
서울남부지도원(02)514-2652/5,  
서울북부지도원(02)215-2674/9,  
부산지도원(051)528-2001/2,  
대구남부지도원(053)756-6461/3,  
대구북부지도원(053)621-8302/5,  
인천지도원(032)574-6172/5,  
광주지도원(062)523-7161/2,  
대전지도원(042)625-3214/6,  
수원지도원(0331)39-6592/5,  
청주지도원(0431)275-0832/5,  
전주지도원(0652)254-8327/8,  
창원지도원(0551)89-3182/5,

# \*\*\* 공지사항 \*\*\*

## 제4차 국제 전자통신기술 포럼 개최 안내

러시아 과학기술정책부는 경제 아카데미가 추진하고 있는 “90년대 전자통신기술” 제하의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동프로그램 위원회와 직접 접촉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명 : The 4th International Russian Form on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the 90's(ECT'94)

나. 개최기간 : 1994. 6. 27~7.2

다. 개최장소 : Academy of National Economy  
(주소 : Pr. Vernadskogo 82,  
Moscow)

라. 개최목적

○ 러연의 사유화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협작기업 창출 유도

○ 러시아 국가 통신체계의 현대화·컴퓨터화에 필요한 컴퓨터·통신장비의 구매 상담 및 관련기술의 도입 가능성 등 협의

마. 대상

○ 기술적 측면

— 90년대의 Global WAN 네트워크 구축  
— X400, X500, ODA/ODIF, 데이타베이스, 터미날의 응용과 서비스

— 1SDN과 통합서비스, 지능네트워크와 그 응용

— 자동차 통신, 고속네트워크, 광섬유통신, 프로토콜 기술

—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워크스테이션

— 설계 및 개발경험 교환 등

○ 정책 및 사회환경적 측면

— 국제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공급체계  
— 국내외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관리와 운영

— 세계 환경네트워크의 확장

— 하부구조의 개선과 지역네트워크 형성

— 통신 개방화에 따른 보안대책

— OSI 개편 및 새로운 표준

— EDI, EDIFACT 및 전자정보시장 등

바. 문의처 : 7(095) 198-7691, 198-7041

## 팩시밀리 일류화 대상상품 품질기준 제정 안내

유망수출상품 세계일류화사업 추진지침 제8조에 의거 일류화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팩시밀리의 일류화 품질기준을 제정하였기 알려드리오니 일류화상품 품질관리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본회 산업전자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Tel : 553-0941/7)

## TELECOM CHINA '94 개최 안내

가. 기간 : '94. 7. 1~7.5

나. 출품품목 : Optical Communication Equipment, Digital Microwave Communication Equipment, Satellite Microwave Communication Equipment,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PCM Communication Equipment, Large & medium capacity digital SPC switching equipment, Digital subscriber switching equipment, Telegram termination and switching equipment, All kinds of the terminal equipment, magnetic card telephone & coinbox telephone, Office automation equipment, Optical cable and local & Toll communication cable, Communication and SPC power supply, Communication instrument, Postal vehicale, Postal machine, Civil electric, Telecommunication circuit and maintainance instrument.

다. 문의처 : Union Fair & Trade Dev.(H.K) Co., Guangzhou office 13/F Gungdong Commerce Hotel 171 Changti Road, Guangzhou

Tel : (020) 888-2823, 884-9075

# \*\*\* 공지사항 \*\*\*

Fax : (020)884-9074

## 대일지역 외화대출 운용제도 개선 안내

‘94년 1. 21일 한국은행의 “외환여수신업무에 관한 세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심한입초국』으로부터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이 확인 또는 추천한 분에 한하여 융자취급』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지역 외화대출 융자취급지침”(‘93. 1. 8. 상공자원부 산정 55113-6)이 폐지 되오니 회원사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변 경	비 고
<b>〈융자대상〉</b>		
- 시설재 수입자금 · 제조업(사무용 기기, 부분품 제외) · 연구용, SOC, 항공기	- 시설재 수입자금 · 제조업(시설재 부착부분포함 사무용기기 제외) · 중고선박	· 융자대상 확대 및 품목추가 · 타 자금조달수요방법 (해외증권발행, 상업차관 등)과 비교하여 제반조건면에서 불리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현 행	변 경	비 고
- 해외직접투자자금 - 계획조선용 기자재 자금 - 수은협조 응자자금 - 원리금 상환지급 (한전, 지하철)	(좌동)	용역비 및 도입비 하지 않도록 운용
〈융자비율〉		
- 시설재 수입자금 · 대기업 : 80% · 중소기업 : 90%	- 시설재 수입자금 · 대기업 : 90% · 중소기업 : 100%	· 응자비율 확대
〈융자기간〉	- 만기 1~8년	· 융자기간 연장 〔최장 2년 연장〕
〈대출규모〉	- 40억 \$	· 20억 \$ 증액
〈대출금리〉	- LIBOR + 1.5%	- 현행 - · 대출금리 축소 유도
〈Syndication 대출유도〉	-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하는 거액대출에 대해 여신한도내에서 각 은행별로 대출	-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하는 거액대출시 주거래은행이 간사가 되어 수개 은행이 공동대출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영업비밀의 보호에서 시작됩니다**